【 보통상해보험 사업방법서별지 】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보통상해

2. 보험종목의 명칭 : 보통상해보험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 또는 3년 내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분납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가. 자동대출납입 : 해당 없음
   나. 보험료의 반환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 별도의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보험계약대출 :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마. 회사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피보험자별로 2억원 이내로 하며, 보험만기 및 보험나이(가입시점)는 80세를 초과할 수 없다.
   바. 회사는 만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판매할 수 없다.
   사.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만 부가할 수 있다.
   아.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 회사는 동 상품의 일부 담보를 결합하여 특정 플랜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HI-군인안심상해플랜 등)
   차. 임신·출산관련 특별약관(모성사망보장 특별약관, 여성산과자궁적출수술보장 특별약관, 유산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태반조기분리진단보장 특별약관, 분만전후출혈·수혈진단보장 특별약관)은 임신한 여성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카.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한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타.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관련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음

파.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 특별약관, 단체취급 특별약관 중 하나를 가입한 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은 보통상해보험으로 인수할 수 없다.

① 계약자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전자금융업자 또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② 피보험자

- 상기 계약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 중 해당 보험서비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신청한 자

하.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제외)보장 특별약관의 경우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으로 합니다.